##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02 발의연월일: 2025. 4. 14.

발 의 자: 박범계 • 박지원 • 추미애

김승원 • 정준호 • 김남근

신정훈 • 이정문 • 정을호

정성호 · 부승찬 의원

(11인)

#### 제안이유

2008년에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법정 중심의 투명한 재판을 통하여 전관예우나 무전유죄·유전무죄 등 논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민과 사법부가 소통하는 장으 로 기능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기여 를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에 고의에 의한 생명침해범죄 사건 등을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으로 정하고, 지방법원 본원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갖춘지원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참여재판을 더욱 활성화하여 국민의 사법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고의에 의한 생명침해범죄(교사죄 포함)와 이에 준하는 범죄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심판하도록 '필수적 대상사건'으로 정하여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확대하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 배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3항 및 제9조제1항·제3항).
- 나. 국민참여재판 관할법원을 '소규모 지원'을 제외한 모든 지방법원 본원·지원으로 확대함(안 제2조제3호 신설 및 제10조 등).

#### 법률 제 호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규모 지원"이란 규모가 작거나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인적·물 적 여건을 갖추지 못한 지방법원 지원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권리"를 "권리와 의무"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
- 1.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
- 2. 제9조제1항에 따른 배제결정이 있는 때
-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상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하 "필수적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심판한다.
- 1. 「형법」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제119조제1항·제2항(폭발물사용살인),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

살인 등), 제291조제1항(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 제301조의 전단(강간 등 살인), 제324조의4 전단(인질살해), 제338조 전단(강도살인), 제340조제3항(해상강도살인)

-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강간 등 살 인)
-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강간 등 살 인)
-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아동학대 살해)
- 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항제2호(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의 교사죄에 해당하는 사건
- 7. 고의의 범죄행위로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한 범죄 또는 그 미수 범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제6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할 수 있다.

- 1. 심리의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 2. 필수적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건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조의2(공소사실의 변경 등으로 인한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 등) 법원은 공소제기 후 공소사실의 추가나 변경 또는 사건의 병합으로 인하여 필수적 대상사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사건을 국민참여 재판절차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필수적 대상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다음 날까지(다만, 제6조의2의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 날까지로 한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고인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결정"을 "배제결정 또는 배제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으로 한다.

2.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만, 사건이 필수적 대상사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지방법원"을 "소규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심판권을 가지는 사건 중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제1항의 회부결정을 한 사건"을 "제1항에 따라 소규모 지원 합의부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한 사건"으로 한다.

- ① 소규모 지원 합의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결정을 하여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지원 합의부가 제9조제1항의 배제결 정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제8조에 따라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 2. 사건이 필수적 대상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제6조의2에 따라 국민 참여재판절차 회부결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를 "지방법원 합의부(다만, 소규모 지원 합의부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지방법원장"을 "지방법원장과 지방법원 지원장(다만, 소규모 지원의 지원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지방법원장"을 각각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 지원장"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를 "소규모 지원 합의부"로 한

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3. "소규모 지원"이란 규모가
	작거나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인적·물적 여건을 갖추지 <u>못</u>
	한 지방법원 지원 중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을 말한
	<u>다.</u>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누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든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u>권</u>	<u>권</u>
<u>리</u> 를 가진다.	<u>리와 의무</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대상사건) ① (생 략)	제5조(대상사건) ① (현행과 같
	음)
②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원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제1항	해당하는 때에는 국민참여재판
에 따른 배제결정이 있는 경우	을 하지 아니한다.
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	1.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
<u>한다.</u>	<u>하지 아니하는 때</u>
	2. 제9조제1항에 따른 배제결정
	<u>이 있는 때</u>
<u>&lt;신 설&gt;</u>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상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건(이하 "필수적 대 상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심판한다.
- 1. 「형법」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제119조제1항・제2항 (폭발물사용살인),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제291조제1항(약취, 유인, 매매,이송 등 살인), 제301조의2전단(강간 등 살인), 제324조의4전단(강도살인), 제340조제3항(해상강도살인)
-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강간 등 살인)
-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강

   간 등 살인)
-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아 동학대살해)
- 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항제2

제6조(공소사실의 변경 등) ①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재판을 계속 진행한다. 다만, 법원은 심리의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호(약취 · 유인죄의 가중처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에 해당하는 사건의 교사죄에 해당하는 사건 7. 고의의 범죄행위로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한 범죄 또는 그 미수범으로서 대법원규칙 으로 정하는 사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에 해당하는 사건과 「형사소 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사 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제6조(공소사실의 변경 등) ① -----. 다만,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해당 사건 을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 니하고 심판할 수 있다.

있다.

<신 설>

<신 설>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피고인 의사의 확인)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배제결정) ① 법원은 공소 제9조(배제결정) ① -----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 1. 심리의 상황이나 그 밖의 사 정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 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 2. 필수적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건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국민참 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 사를 표시한 때
- ② ~ ④ (생 략)

제6조의2(공소사실의 변경 등으 로 인한 국민참여재판절차 회 부 등) 법원은 공소제기 후 공 소사실의 추가나 변경 또는 사 건의 병합으로 인하여 필수적 대상사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 에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절차 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8조(피고인 의사의 확인)

- ① ~ ④ (생 략)
- ⑤ 필수적 대상사건에 대하여 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 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결된 다음날까지 다음 각 호 -----다음 날까지(다만, 제6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 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1. (생 략)
- 2.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 하지 아니하여 국민참여재판 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4. (생략)
- ② (생략)
-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의 특례) ① 제8조에 따라 피 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제9조제1항의 배제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

- 조의2의 경우에는 국민참여재 판절차 회부 후부터 공판준비 기일이 종결된 다음 날까지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 로 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 1. (현행과 같음)
- 2.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 하지 아니하여 국민참여재판 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다만, 사건이 필수적 대상사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4.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③ ---배제결정 또는 배제신청 에 대한 기각결정----.
- 제10조(지방법원 지원 관할 사건 | 제10조(소규모 지원 관할 사건의 특례) ① 소규모 지원 합의부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절 차 회부결정을 하여 사건을 지 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하

우에는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 결정을 하여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 다.

②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가 심 판권을 가지는 사건 중 지방법 원 지원 합의부가 제1항의 회 부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관할 권을 가진다.

제11조(통상절차 회부) ① 법원은 제 피고인의 질병 등으로 공판절 차가 장기간 정지되거나 피고 인에 대한 구속기간의 만료, 성 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 그 밖에 심리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피

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지원
합의부가 제9조제1항의 배제결
정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8조에 따라 피고인이 국민
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
시한 경우
2. 사건이 필수적 대상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제6조의2에 따
라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결정
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
<u>다)</u>
② 제1항에 따라 소규모 지원
합의부가 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로 이송한 사건
·.
]11조(통상절차 회부) ①

고인·변호인이나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 청에 따라 결정으로 사건을 <u>지</u> 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 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 판하게 할 수 있다.

#### ② ~ ④ (생 략)

- 제22조(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의 저작성) ① 지방법원장은 배심원 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매년 그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의 주민등록 정보에서 일정한 수의 배심원 후보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 ·주소 및 성별에 관한 주민등 록정보를 추출하여 전자파일의 형태로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행정 안전부장관은 30일 이내에 주 민등록자료를 <u>지방법원장</u>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③ 지방법원장은 매년 주민등 록자료를 활용하여 배심원후보 예정자명부를 작성한다.

X
<u>방법원 합의부(다만, 소규모 지</u>
원 합의부는 제외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세22조(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의
작성) ① 지방법원장과 지방법
원 지원장(다만, 소규모 지원의
지원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
다)
2
기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 지원장
③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
지원장
<del></del>
·

제36조(공판준비절차) ①・② (생	제36조(공판준비절차) ①・② (현
략)	행과 같음)
③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u>지</u>	③ <u>소</u>
<u>방법원 지원 합의부</u> 로부터 제	<u> 규모 지원 합의부</u>
10조 제1항에 따라 이송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이미 공판준	
비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필요	
한 때에는 공판준비절차에 부	
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